



제 42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벌칙 강화 및 고발 대상기관 확대 등〉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79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98호)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54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6
1. 벌칙 강화	6
2. 고발 대상기관 확대	12

I. 제안경위

1.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가. 발 의 자 : 이해식 · 김성환 · 박상혁 · 박정현 · 신정훈 · 김영호
황명선 · 윤준병 · 서영석 · 민병덕 · 서영교 · 염태영
의원(12인)

나. 제 안 일 : 2025. 2. 24.

다. 회 부 일 : 2025. 2. 25.

※ 의안번호 : 8379

2.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가. 발 의 자 : 이병진 · 김영환 · 김영호 · 한정애 · 이원택 · 민병덕
이상식 · 소병훈 · 오기형 · 허성무 · 박지원 · 권향엽
김 윤 · 임호선 · 장종태 · 문금주 · 오세희 · 양부남
이용우 · 임미애 · 김문수 · 남인순 · 김동아 · 이재관
강준현 의원(25인)

나. 제 안 일 : 2025. 3. 11.

다. 회 부 일 : 2025. 3. 12.

※ 의안번호 : 8798

3.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가. 발 의 자 : 박성준 · 노종면 · 정을호 · 윤종균 · 한민수 · 백혜련
박 정 · 이재강 · 박홍배 · 이인영 · 이정현 · 민병덕
박희승 · 허 영 · 문진석 · 박홍근 의원(16인)

나. 제 안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 의안번호 : 1015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로

수사처 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함. 현행법은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2.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현재 없음. 이로 인해 최근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유도하

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가 고발하는 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5조).

3.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불출석, 위증, 모욕죄 등에 대한 고발을 검사가 하도록 하고,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

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벌칙 강화(이병진의원안)

개정안은 ① 국회로부터 보고 요구를 받고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표-1] 개정안에 따른 불출석 등의 죄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법정형
현 행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좌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좌동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좌동	
신설	<u>거짓으로 보고한 자</u>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 이나 감정인	좌동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좌동	
신설	<u>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u>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 -----

현 행	개 정 안
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u>선서</u>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u>거짓으로 보고한 자, 선서</u> ----- ----- -----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② ----- ----- ----- <u>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u> ----- -----.

현행 「국회법」 제128조¹⁾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²⁾는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관계인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12조³⁾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

-
- 1)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②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조항 신설 및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벌칙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국회의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거짓 보고 등에 따른 형사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⁵⁾

3)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감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4) 2022년 국정감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의원실 등에서 주무부처 및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제출 곤란함을 안내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일괄 공지하였음(한국일보, “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 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 2022. 9. 28.).

5)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에 대한 제20대국회 논의[제34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

개정안은 ①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②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정형의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 등 벌칙규정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최근 재의 결과 부결⁶⁾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 허위 보고 또는 허위 서류등 제출 등에 대한 벌칙규정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죄질의 경중, 범죄행위의 태양 등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재의 결과 부결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①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⁷⁾하고, ②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였음.

원회(2017. 2. 21.)에서 거짓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할 경우, 정부가 국회의 고발을 의식하여 자료제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및 재의 경과

구 분	운영위 의결	본회의 가결	정부 이송	정부 재의요구	본회의 재의의 건 부결
일 자	2024. 10. 31.	2024. 11. 27.	2024. 12. 6.	2024. 12. 19.	2025. 1. 8.

7) 참고로, 정부는 재의요구서에서 허위 보고 또는 허위서류등 제출에 대한 법정형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과중하여 과잉형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힘.

[표-3]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 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표-4] 재의 결과 부결된 개정안상 벌칙규정⁸⁾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u>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u>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당한 이유 없이 <u>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u> ,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8) 개정안에서 신설된 벌칙규정만 표시함.

둘째, 개정안은 ‘거짓 보고’는 처벌하면서도 ‘거짓 서류등 제출’은 처벌하고 있지 않은데, ‘보고 거절’과 ‘서류 제출 요구 거절’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의 벌칙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등 제출’ 행위의 가벌성을 달리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 보고’만 처벌하는 경우 형벌 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⁹⁾ ‘거짓 서류등 제출’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재의 결과 부결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허위 보고’와 ‘허위 서류등 제출’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함께 규정함.

2. 고발 대상기관 확대(이해식의원안 · 이병진의원안 및 박성준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 · 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고발하는 경우에 그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이해식의원안은 검찰 외에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발 접수 또는 수사 개시 기관이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② 이병진의원안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¹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5조제1항 및 제4항), ③ 박성준의원안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제4항).¹¹⁾

10)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수사기관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양경찰, 군검찰, 군사경찰, 특별검사 등이 있는데, 본 검토보고에서는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염두에 두고 검토함.

11) 박성준의원안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의 죄에 더하여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의 죄 및 제13조(국회모욕의 죄)의 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표-5] 이해식의원안 · 이병진의원안 및 박성준의원안 비교

구 분	현 행	이해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성준의원안
고발 대상 기관	검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접수 또는 수사 개시 기관이 사건 이송 시 국회 보고	수사기관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표-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해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성준의원안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 원회는 증인 · 감정인 등이 제 12조 · 제13조 또는 제14조제1 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 정한 때에는 <u>고 발하여야</u>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5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발) ① - ----- ----- ----- ----- ----- ----- -----수 <u>사기관의 장에</u> <u>게 고발하여야</u>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	④ -----	④ -----	④ -----

현행	이해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성준의원안
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u>검사</u>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u>검찰총장</u>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u>검사</u> (<u>고위공직자범죄</u> <u>수사처</u>에 소속 된 <u>검사를 포함</u> <u>한다</u>), <u>사법경찰</u> <u>관</u>은----- ----- ----- ----- -----<u>고위</u> <u>공직자범죄수사</u> <u>처장·검찰총장</u> <u>또는 경찰청장</u>- ----- ----- -----. ⑤ 제1항에 따 라 <u>고발을 접수</u> <u>하거나 수사를</u> <u>개시한 기관(공</u> <u>소제기 여부를</u> <u>최종적으로 판</u> <u>단한 기관을 포</u> <u>함한다)이 「형</u> <u>사소송법」 및</u> <u>관계 법령에 따</u> <u>라 사건을 이송</u> <u>하는 경우에는</u> <u>그 이유를 명시</u>	----- -----<u>수사</u> <u>기관</u>은----- ----- ----- ----- -----<u>수사</u> <u>기관의 장</u>----- ----- ----- ----- -----<u>고위</u> <u>공직자범죄수사</u> <u>처장 또는 검찰</u> <u>총장</u>----- ----- ----- -----.	----- -----<u>검사</u> (<u>고위공직자범죄</u> <u>수사처</u>에 소속 된 <u>검사를 포함</u> <u>한다</u>)----- ----- ----- ----- -----<u>고위</u> <u>공직자범죄수사</u> <u>처장 또는 검찰</u> <u>총장</u>----- ----- ----- -----.

현 행	이해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성준의원안
	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나. 현행 고발제도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¹²⁾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제12조), 국회모욕의 죄(제13조) 또는 위증 등의 죄(제14조제1항 본문)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고발하는 경우 본회의는 의장 명의로, 위원회는 위원장 명의¹³⁾로 검찰총장에게 고발(고발장 제출)하며, 검찰총장으로부터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있음.

12)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음.

다.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취지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2021. 1. 1. 시행)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한정되는 한편,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권¹⁴⁾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지니게 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의 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아니하나,¹⁵⁾ 국회증언감정법에서 불출석 등의 죄 등을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나목¹⁶⁾에서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14)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15)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16)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로 명시하고 있어, 국회가 검사(검찰)에게 고발하면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¹⁷⁾¹⁸⁾

이해식의원안·이병진의원안은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불출석 등의 죄(제12조), 국회모욕의 죄(제13조) 또는 위증 등의 죄(제14조제1항 본문)에 대하여 경찰(수사기관의 장)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수사기관)은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청장(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17) 법무부는 2020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개별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그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서 개별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된다는 입장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고발을 접수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법무부 보도자료(2022. 8. 1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pp.10~11 ; 법무부 보도자료(2022. 8. 1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 p.13).

18) 국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10명에 대하여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로 2024. 12. 24. 검찰(검찰총장)에 고발하였음.

참고로, 각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음.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검찰의 처분결과 보고와 별개로 경찰 역시 경찰 단계에서의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음(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823).

한편,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제정(2020. 7. 15. 시행)되었음.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는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②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찰공무원(경무관 이상)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제1항의 죄(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포함되어 수사처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함.¹⁹⁾

19)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이해식의원안·이병진의원안은 이를 반영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제1항의 죄(위증 등의 죄)의 경우에, 박성준의원안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의 죄(불출석 등의 죄), 제13조의 죄(국회모욕의 죄) 및 제14조제1항의 죄(위증 등의 죄)의 경우에 수사처(수사기관의 장)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수사처검사(수사기관)은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 수사처장(수사기관의 장)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개정안들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제정에 따른 수사처 설립을 반영하여 검찰 외에 경찰 또는 수사처에도 국회증언감정법상 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고발 관련 규정의 법체계상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정한다.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제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표-7] 개정안들에 따른 국회 고발 제도



* 다만, 박성준의원안의 경우 제12조의 죄 및 제13조의 죄도 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음.

라. 주요 검토사항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검사는 고발장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²⁰⁾하고 검찰총장은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의 처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식의원안·이병진의원안에 따르면 국회가 증인·감정인 등의 불출석 등의 죄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청장은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러한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이 보고하는 처분결과는 ① 범죄 혐의에 따른 사건송치(사법경찰관→검사), ② 사건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 송부(사법경찰관→검사)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처분결과²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20) 수사절차는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종결됨. 즉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함(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2023), p.272).

2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들에 따라 수사처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 중에서 수사처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찰 공무원(경무관 이상)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한정되며, 그 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표-8] 고위공직자범죄등의 기소권 배분 현황

수사	공소 제기	
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처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찰 공무원(경무관 이상)으로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검찰	그 외의 고위공직자범죄등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처검사의 수사를 거쳐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후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²²⁾ 수사처장이 보고하는 처분결과에는 공소제기 여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경찰청장 또는 수사처장에게 고발한

22) 공수처법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및 수사처장의 처분결과 보고 외에 검찰총장이 공소제기 등의 최종 처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통상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²³⁾ 국회 고발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²⁴⁾

그런데, 이해식의원안·이병진의원안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불출석 등의 죄 등을 경찰에 고발하여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사하는 경우에 ① 최종적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²⁵⁾하거나, ②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는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90일 이내)²⁶⁾할 수 있음.

23)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24)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823

25)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즉,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불가피하게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⁷⁾

셋째, 이해식의원안은 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기관(공소 제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기관 포함)이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²⁸⁾에 따라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하거나, 공수처법 제24조²⁹⁾에 따라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2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27) 다만, 종전에도 국회 고발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사례는 존재함.

2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2.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29)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등에 있어,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기관 간 이송과정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국회가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이해식의원안은 ‘이송 이유를 명시한 서면’ 외에 ‘관련 서류’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관련 서류에 사건 또는 수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수사정보의 비공개성이 저해될 수 있고, 수사종결 후 최종 처분결과 보고 시에는 관련 서류의 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과정 중 이송 절차에 있어서만 관련 서류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가 이송 여부·기관과 이송 이유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면 ‘이송 이유를 명시한 서면’의 보고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서류’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법제적 측면에서, ① 이병진의원안은 국회 고발 근거규정인 제15조제1항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해식의원안·박성준의원안은 국회 고발 근거규정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수사종결 의무규정인 제15조제4항에서 비로소 고발 대상기관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문 체계상 이병진의원안과 같이 국회 고발 근거규정에서 고발 대상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임.³⁰⁾

또한, ② 이병진의원안은 고발 대상기관을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해식의원안·박성준의원안은 고발 대상기관을 ‘검사, 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수사처검사’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 대상기관을 검사(검찰총장)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³¹⁾되고 있어 수사기관으로 규정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박성준의원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의 죄에 더하여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의 죄 및 제13조(국회모욕의 죄)의 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수사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는 공수처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로서 수사처의 수사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고발장 접수 후 수사를 하는 주체에

30)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다수 있음.

31) 법무부 보도자료(2022. 8. 1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p.11

예) 「5·18민주화운동법」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규정과 달리 고발 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선관위 고발사건 등)

수사처검사를 추가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에 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³²⁾

문 의 처

02)6788-5017

32) 법무부 및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함. 다만, 제21대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023, pp.14~15).

법무부는 ①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을 고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경우, 경찰의 1차적 판단(송치결정 혹은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청 등의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어 2개월 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한 법률의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고,

1차 수사기관인 경찰 및 수사처(기소권 없는 경우)가 최종 결정이 아닌 중간 처분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 수사 결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찰도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고, ② 그간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하던 것을 경찰, 수사처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행위 태양, 사안의 경중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사기관을 국회가 선택해 고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